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527호
- 다. 제출일자 : 2025. 2. 9.
- 라. 회부일자 : 2025. 2. 12.

2. 제안사유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정 범위 확대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 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2호)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자동차 정비기능사 외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와 자동차 보수 도장 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 완화(2명→1명)(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5. 10. 16. ~ 11.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조례명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자동차관리사업¹⁾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고 이중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됨

※ 자동차정비업²⁾의 종류 및 현황

정비업 종류 (최소면적)	정비작업 범위	비 고	업체수 (개소)
자동차종합정비업 (1,000㎡ 이상)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종합정비, 관금·도색	154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00㎡ 이상)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종합정비, 관금·도색	308
자동차전문정비업 (50㎡ 이상)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부분정비 (카센터)	2,681
원동기전문정비업 (300㎡ 이상)	자동차원동기(엔진)의 재생정비 및 튜닝	원동기 정비	8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3)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음
- 현행 조례 제5조4)에서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최소 1~3명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 | |
|-------------|---------------|
| 1. 자동차종합정비업 |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 3. 자동차전문정비업 | 4. 원동기전문정비업 |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생략>

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단서조항을 두어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정비용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뿐만 아니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정비용원으로 허용하도록 자격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조례 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정비사 확보 기준 변경 내용

정비업 종류	현 행			조례 개정후		
	최소 인원 수	자격증 적용		최소 인원 수	자격증 적용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기능사	차체 수리, 도장기능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기능사	차체 수리, 도장기능사
자동차종합정비업	3	○	○	3	○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	○	×	2	○	○
자동차전문정비업	1	○	×	1	○	×
원동기전문정비업	2	○	×	<u>1</u>	○	×

최근 자동차 정비분야 자격 취득자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특히 자동차정비 기능사 취득자는 '22년부터 크게 감소하였고,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운영 및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⁵⁾과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별첨 참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해서도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5) 서울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자격증) 개선 건의(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5.10.)

※ 연도별 자격취득자 현황

(단위:명)

연도	계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20	9,391	1,360	6,169	793	1,069
'21	9,734	1,682	6,086	806	1,160
'22	7,005	1,114	4,492	583	816
'23	7,987	1,343	4,978	610	1,056
'24	7,744	1,357	4,845	599	943

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이 확보해야하는 기술자격 정비요원을 당초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수가 8개소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용이해지고, 업계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규제철폐 사항⁶⁾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철폐로 인해 인력채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당업종의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관련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반대로 정비인력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비인력 교육, 육성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6) 市 보도자료('25.10.17.) : 주택사업 속도는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 2건 발표
 -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 영세 사업자 경영난 해소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중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 확대
 · 원동기 전문정비업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 별첨 :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예시)

구 분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관 련 내 용	<p>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u>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p>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u>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